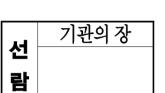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보

www.namwon.go.kr

제19호 2024. 4. 2(화)

조 례

\bigcirc	남원시 조례	제2012호	남원시	예산절감 뜻	및 낭비사례 경	공개에 관한 조	레				1
\bigcirc	남원시 조례	제2013호	남원시	주민참여예	산제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	례				4
\bigcirc	남원시 조례	제2014호	남원시	공공갈등 さ	채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					9
\bigcirc	남원시 조례	제2015호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			14
					세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bigcirc	남원시 조례	제2018호	남원문	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핀	<u> </u> 한 조례					33
\bigcirc	남원시 조례	제2019호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	영 조례					38
\bigcirc	남원시 조례	제2020호	남원시	공공체육시	설 관리 및 윤	연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40
				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bigcirc	남원시 조례	제2022호	남원시	아동학대 여	예방 및 피해야	동보호조려] 일부개정조:	네			57
\bigcirc	남원시 조례	제2023호)23호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63					63			
\bigcirc	남원시 조례	제2024호	세2024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6°					67			
]시 조례 제2025호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레 제2026호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bigcirc	남원시 조례	- 남원시 조례 제2027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90			
0	남원시 조례 제2028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14							143			
		금원시 조례 제2029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4									
0	남원시 조례 제2030호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150						150				
	○ 남원시 조례 제2031호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Ŭ	ВСТ	η = 001	рС	1116	102010	14 1 22		0== 11			200
ই											
림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보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12 호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산절감 사례
- 2.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우수 사례
- 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户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 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 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시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13 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사항을 종합하여 심의 한다"를 "선정하고 심의한다"로 한다.

제4장(제18조)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2조 중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제2조(용어의 정의)
"주민" <u>이라 함은</u> 다음 각 호와	<u>이란</u>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	제11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
능) ① (생 략)	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②
기능을 수행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분과위원회, 지역회의</u> 등 의	3. <u>분과위원회</u>
견 심의 조정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예산편	3
성요구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	
한 후 사업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선정하고 심의한다.
주민의견사항을 종합하여 심의	
<u>한다</u>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장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u><삭 제></u>
<u>지역회의</u>	
제18조(지역회의 구성 등) ① 시	<u><삭 제></u>
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	

<u>현</u> 행	개	정	Ċ
런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u>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u>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			
내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			
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			
능을 수행한다.			
1. 읍・면・동별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2.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			
3.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4.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			
<u>니터링</u>			
5.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등			
⑥ 지역회의의 위원의 임기, 해			

시

현 행	개 정 안
촉,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회의 소집을 요구할	
<u>수 있다.</u>	
⑧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	
<u>당</u>	
읍・면・동 주민생활담당이 한	
<u>다.</u>	
제19조(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	제19조(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
회) ① 시민위원회, 각 <u>분과위원</u>	회) ① <u>분과위원</u>
<u>회, 지역회의</u> 에서 제출된 안건	<u> </u>
에 대하여 총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	
의회(이하 "대표협의회"라 한	
다)를 둔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장은 시민위원회, 각 <u>분과위원</u>	<u></u> 분과위원회
회, 지역회의, 대표협의회를 운	
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	

보

현 행	개 정 안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u>
②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u>분과</u>	② 분과
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협의회	위원회
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시민위원	제22조(수당 등)
회, 각 <u>분과위원회, 지역회의</u> ,	<u>분과위원회</u>
대표협의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	
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시

직인

2024년 4월 2일

片

남원시 조례 제 2014 호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런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갈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 2.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 한다.
- 4. "공공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공공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入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공공갈등 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 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조례는 시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시민간, 시민과 시 간 또는 시민과 그밖의 기관 단체 등 간에 갈등이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적용한다.
 - 1. 시정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 2. 그 밖의 공공갈등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 ②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入

-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8조(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남워시의회 의원
- 2.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시

- 3. 공공갈등, 사회갈등, 지역갈등, 갈등조정 경험자
- 4.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해당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위원회에 참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예방·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을 갈등관리전문기 관으로 지정·활용할 수 있다.
 - 1.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참여 등 자문
 - 2. 갈등예방 · 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의 작성 · 활용
 - 3. 갈등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 4. 그 밖에 갈등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항

入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片

-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
 - 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은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공공갈등 토론회 · 공청회 운영 지원) 시장은 공공갈등의 의사소통 및 당

사자 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토론회 · 공청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에는 제11조제2호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 및 활용할 수 있다.

片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등)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 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제19조(갈등관리 지원)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토론회 · 공청회의 운영과 조 사 및 연구,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15 호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7조, 제29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8조"를 "특별법 제40조제3항"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수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부회장, 감사, 간사, 위원의 임기는"을 "부회장, 감사, 위원의 임

기는"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각각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入

- 제24조의2(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0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제27조 중 "정한다"를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 조례 제1787호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 제3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읍·면·동에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아 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 제1조(목적) -----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지방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 다) 제27조. 제29조에 따라 남 40조-----원시(이하 "시"라 한다) 각 읍ㆍ 면 ·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 치 및 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5조(기능) ----- 특별법 <u>제40조제3항</u>-----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 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 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서 정할 수 있다 정한다. ⑤ ~ ①(생 략) ⑤ ~ ⑪(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①・②・③ (생 략) | <u><삭 제></u>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제19조(정치적 중립) -----

현 행	개 정 안
의 위원은 <u>특별법 제29조제2항</u>	<u>특별법 제40조제5항</u> -
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회장, 감사, 간사, 위원의	② 부회장, 감사, 위원의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특별법 제29조제2항</u> 에 따른	4. <u>특별법 제40조제5항</u>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	
나,「공직선거법」상 선거중	
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혅 했

시

거쳐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1. 특별법 제40조제5항-----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 3. (생략)
- ③ ④ (생 략)

~ ⑤ (생 략)

-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 <삭 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 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삭 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 치 ·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 <u>다.</u>

<신 설>

개 정 아

- 2. · 3.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5) (현행과 같음)

- 제24조의2(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0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정보 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 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 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현 행	개 정 안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①・② (생 략)	제25조(감독) ①・② (현행과 같
	흥)
<u><신 설></u>	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
	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
	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	제27조(운영세칙)
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	
쳐 자치회장이 <u>정한다</u> .	<u>정하고, 확정된 운</u>
	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
	<u>다</u>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보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16 호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의) ①・② (생 략)	제8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장	③
이 회부한 지적확정조서는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 범위	
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u>이</u>	
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u><후단 삭제></u>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	
나 결정을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①・② (생 략)	제10조(의견청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u><삭 제></u>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이 제출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워시 조례 제 2017 호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남원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 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

안 마련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시

- 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 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 판매 업체 참여 확대
- 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남원시의회 의원 2명
 - 2. 관련 부서장 3명
 - 3. 민간 관광상품 브랜딩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또는 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남원시의회 의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入

②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片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신청 대상은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 제10조(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 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시

-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시상) ① 시장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연 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 • 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
 - 2. 상품의 품질 향상
 - 3.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
 - 4. 그 밖에 우수관광상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이 제12조의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
 -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 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 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

- 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판로개척)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제12조에서 선정한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시

- 2. 유관 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 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 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 6. 그 밖에 판로개척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18 호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 2.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 3.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4. 국가·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관광시설 위탁

및 문화·관광사업 운영

- 5. 그 밖에 시의 문화·관광의 발전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의 운영
-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 8. 정관의 변경
- 9. 해산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
-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入

-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되, 선임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 당연직 이사: 이사장, 시의 재단 업무 소관 국장
- 2.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 ⑤ 그 밖에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사업을 할 수 있다.

시

-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3조(예산 · 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3조(설립준비)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 준비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18 호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 2.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 3.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4. 국가·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관광시설 위탁

제19호

5. 그 밖에 시의 문화·관광의 발전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片

-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의 운영
-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 8. 정관의 변경
- 9. 해산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
-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入

-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되, 선임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 당연직 이사: 이사장, 시의 재단 업무 소관 국장
- 2.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 ⑤ 그 밖에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시

-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3조(예산 · 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3조(설립준비)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 준비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19 호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1. "셔틀버스"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 2. "축제장"이란 춘향제, 흥부제 등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 는 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
- 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 객을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유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보

-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 제5조(운영범위) 제3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 제7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20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를"을 "다음 각 목의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 가. 유아: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 나.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 다.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 라. 성인: 19세 이상의 사람(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자로 본다)
 제12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호"를 "제9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
 - 10.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	4
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사	
용하는 <u>자를</u> 말한다.	<u>다음 각 목의 사람을</u>
<u><신 설></u>	가. 유아: 6세 이하의 미취학
	<u>아동</u>
<u> <신 설></u>	<u>나.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u>
	<u>하인 사람</u>
<u> <신 설></u>	다.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
	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
	한 중・고등학생
<u> <신 설></u>	라. 성인: 19세 이상의 사람(다
	<u>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u>
	로자로 본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이	<u><삭 제></u>
<u>하인 사람을 말한다.</u> C "코샤너"이리 14개 이사 10개	∠ λ
6.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u><삭 제></u>
<u>이하인 사람을 말한다.</u> 7 "이로"이라 10세 이사이 시라	∠ & } _ चो \
7.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	<u><삭 제></u>
<u>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u>	

시

혅 했 개 정 아 은 경로자로 본다. 5. ~ 9. (현행 제8호부터 제12 8. ~ 12. (생략) 호까지와 같음)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 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 ---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3. 삭 제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10.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 용하는 경우 11.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삭 제>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5호부터 제11호까 ----- 제9호----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 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

현 행	개 정 안
의 50을 감경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 <신 설></u>	9.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
	용하는 경우
<u> <신 설></u>	10.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Т	명 칭	세부시설	소재지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충정로 341	
	인공암벽장	실외암벽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종합	롤러경기장	트랙, 로드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스포츠 타운	다목적 롤러하키장	실내구장(막구조)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수영장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축구장	야외축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족구장	야외족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등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등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신준섭	복싱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만인로 41-51	
육면 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만인로 41-51	
관덕정		국궁장	남원시 소리길 122-23	
황산정		국궁장	남원시 운봉읍 군회동길 74	
지리산건	^년 실내수영장	수영장, 헬스장	남원시안월면서뮤리628-2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시

(단위:원)

			체육경기			;	체육경	· 경기 외	(단위	· ii/
시	설	기준			· 공휴일			공휴일	비	고
			평일 주간	평	일야간	평 주	찬	평일야간		
종합	축구 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60,0	000	80,000		
운동장	육상 경기장	1회 3시간	15,000	20	0,000	25,0	000	30,000		
	·원 세육관	1회 3시간	80,000	10	0,000	150,0	000	200,000		
I '	·원 적구장	2시간/1면 (조명료포함)	20,000	25	5,000					
남원 터	비니스장	2시간/1면	6,000	8	,000	,		병기외		
이곳이	· 남벽장	전용사용료 (1일기준)	50,000	70	0,000		대여 불가			
	ц ¬ о	1회 2시간	2,000	2	,500					
		구분	성인		청소	년	어린이			
롤러		월정회원 (주간)	20,000		15,0	00	-	10,000		
경기 장	트랙, 로드	월정회원 (야간)	25,000		20,0	00	-	15,000		
Ö		1회 3시간	평일]주(<u>'</u> }	공휴	-일 •	평일야간		
		1월 0개신	40,	000		50,000				
다	목적	1회 3시간	평일]주(<u>'</u> }	공휴	-일 •	평일야간		
롤러	하키장	1위 3기신	40,	000			50,	000		
		구분	성인		청소	년	9	린이, 유아		
	1인		60,000		40,00	00		20,000		
남원 실	내수영장	상 1인 1회 (2시간) 3,000		2,000			1,000			
	헬스장 1인 월		30,000							
]실내 장 내)	1인 1회 (2시간)		2,000						

		체유	낚 경기	체육경	경기 외		
시설	기준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비	고
남원 실내탁구장	1인 월	30,000		,			
(남원실내 수영장 내)	1인 1회 (2시간)	2,0	000				
남원	1인 월	40,	000	체육경	병기외		
실내배드민턴장	1인 1회 (2시간)	2,0	2,000		불가		
남원 축구장	1회 3시간	30,000	40,000				
남원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 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장비 무료 대여)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1:00

- 인공암벽장 운영 시간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휴무)
- · (12월~3월)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 (4월~11월)
- 화요일 10:00~19:00
- 수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2시간

제19호

2. 남원문화체육센터

(단위:원)

		체·	육경기	체육경	기외		
시설	기준	평일 주간	공휴일 ·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 평일야간	비고	
v1 11	1회 3시간	30,000	40,000	40,000	50,000		
실내 체육관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3시간)		300,000				
축구장	1회 3시간	30,000	40,000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체육경기외	대여불가		
풋살장	1회 2시간		10,000 린이, 청소년)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기본사용료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기본사용료 100퍼센트 가산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1:00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3. 지리산권 실내 수영장

(단위:원)

시설	기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비고	
	1인 월	60,000	40,000	20,000		
수영장	1인 1회 (2시간)	3,000	2,000	1,000		
	1인 월		30,000			
헬스장	1인 1회 (2시간)		2,000			

-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
- 수영장의 경우 월정기권 가임여성 10퍼센트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 월정기권 1일 사용시간 : 2시간
-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별표 3]

체육시설 부대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사용기준	기본	<u>-</u> 료	비 고	
		조명	타워	1회3시간	120,0	000	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기
	조하 안동장	전	7]	1일1회	20,0	000	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기
		음	ों ं	1일1회	20,0)00	산 2.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u>조</u>	면	1회	실내조명	80,00	
	남워		0	14	무대조명	80,00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5,000
나워 조하	남원 실내 체육관	이미	향	1회	30,0	000	원, 냉·난방 20,000원 추가
나라 보고 아		냉・	난방	1회	40,0	000	- 3. 무대조명,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전	7]	1ঐ	20,0)00	
	남원	전	7]	1일1회	20,0	000	1.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다목적구장 '	이미	챵	1일1회	20,0	000	2.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남원 테니스장	조	吗	1회	4,00	00	1. 1회 기준 2시간
	인공암벽장	전	7]	1일1회	20,0	000	1. 전기 1회 기준 1일
		고메	트랙	1회	30,0	000	1. 1회 기준 3시간
	롤러 경기장	조명	로드	1회	15,0	000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ŏ ∕ l ´ŏ	전	7]	1회	20,0	000	냉·난방 15,000원 추가

	구 :	<u>.</u>		사용기준	기본료	비 고
	다목적	조명		1회	20,000	
	롤러 하키장	전기		1회	20,000	
		전기		1회	20,000	
	남원 실내	조명		1회	80,000	
	수영장	음향	-11	1회	30,000	
남원 총합		냉·난	방	1회	40,000	
남조이 스 스 로 스 로 스 로 소 로 む こ こ こ こ こ こ こ こ こ こ こ こ こ こ こ こ こ こ	남원 실내	전기		1회	20,000	
	탁구장	음항	ŧ	1회	20,000	
	실내 배드민턴장	전기		1회	20,000	1. 1회 기준 3시간
	남원 축구장	조명티	위	1회	40,000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난방 15,000원 추가
	남원 족구장	조명티	위	1회	15,000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전기		1회	20,000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ス	리산권.	조명		1회	80,000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퍼센트 7
실1 	내수영장	음항	1	1회	30,000	산
		냉·난	방	1회	40,000	□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퍼센트 <i>7</i> 산
	탁 지	ŀ		1개	1,000	
	의 지	}		1개	500	
	샤워장	}		1인 1회	500	
		실내조	명	1회	30,000	
		주면	축구	1회	40,000	
п =	국명 타워 당화체육센터 11		족구	1회	15,000	
분화 	·제퓩센터	냉·난	방	1회	20,000	
		유	향	1회	20,000	
		전 🧦	7]	1회	20,000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21 호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4. "공영장례"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片

-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장례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

-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 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4.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5. 검사의 검시(檢屍)를 마친 변사자
- 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에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1. 수의, 관, 운구비,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 2. 화장 및 봉안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 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 다.
- 제7조(조사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2, 공영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1000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남/여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사 망 자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0 211 1 0 2 1	장례일자			장례방법			
신청사유							
「남원시	공영장례 지	원 조례」 제7	7조제1항에 따라	막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	<u>]</u>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구비서류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 , , , ,	5. 장례수행약 6. 화장증명시 7. 봉안당 안	설체 사업자등 1	•				

210mm×297mm(백상지 80g/m²)

공영장례 지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 이용 동의서

남원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시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례 지원	3년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중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등급,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3년	

-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시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제7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	사 망 자 인적 사항	∘주소: ∘성명: (남/여)∘생년월일:				
	장례수행자					
	지원사유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 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22 호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 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남원시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

시

여야 한다.

제14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21조) 중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 중 "방지 등과"를 "피해아동 보호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시

혀 했 개 정 아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 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 <삭 제> 에 관한 사항 5. (생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2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삭 제> 는 제5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 하로 구성하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 원장이 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를

<u>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 •</u>

보

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 • 자문 결과를 위원회 정기회의 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 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 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을 두어야 한다.
 -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남원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 년 이상인 사람
 -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 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 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 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

제13조 · 제14조 (생 략)

<u>제15조</u>(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시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u>국가아</u>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수 있다.

제16조 (생략)

제17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 담・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 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 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u>제18조</u> ~ <u>제20조</u> (생 략)

<u>제21조</u>(수당 등) <u>위원회 및 소위</u> <u>원회</u>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용회선으로 설치하고 매일 24시					
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u>제15조</u> ・ <u>제16조</u>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u>제17조</u>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아동정</u>					
<u>보시스템</u>					
<u>.</u>					
<u>제18조</u>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					
<u> 담 • 교육 등의 제공)</u>					
<u>제공하여야 한다</u>					
.					
<u>제20조</u> ~ <u>제22조</u> (현행 제18조부					
터 제20조까지와 같음)					
<u>제12조</u> (수당 등) <u>위원회</u>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 대 예방 및 <u>방지 등과</u>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u>제23조</u> (생 략)

제19호

<u>.</u>
<u>제23조</u> (비밀준수의 의무)
<u>피해아동 보호와</u>
•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보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23 호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관련기관"이란 남원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화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남원시 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 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片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자립적으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 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실시
 -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 4.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入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남원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남원시의원 2명
 - 2.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
 - 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시민 및 민간단체 대표
 -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片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민간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를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24 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4. "수산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6.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 7.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片

- 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수산 인
- 제4조(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 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
 - 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 3. 그 밖에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3퍼센트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① 이차보전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차보전지원 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제3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한다
- 제7조(지급방법) ① 이차보전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이차보전지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보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및 지원중지)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 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入

- 3. 사망, 전출,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지원을 받은 자는 농어업경영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전에 상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지원의 규모, 조건,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9호

부 칙

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상환 완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성 명		성	별	생년 월일			
신청자	자 주 소							
	영 경 력	연락처						
	사업분여	Pŧ	사업명		사업 규모			
신 생 내 용	사업대상	-ス]						
711 0	사업비			ਉ	자	자 부 담		
	(천원)							
농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①								
남 원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사 업 계 획 서

시

1. 현 황

	구	분	L T	<u>-</u>	밭	과 수	· 원		계
영농규모	소	유							
(m^2)	임	차							
	7-	1							
재배현황	ㅂ	月	사	과	刖	포	도		계
(m²)									
가축사육	한	우	돼	지	닭				계
규모(두,수)									

-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세부사용내용

계보시어면	규 격	7:3	rl	7].	기 서 라	사 업 비(천원)				
세구사합명 		U /	가협성	합	계	융 자	자부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별지 제2호서식]

이차보전금 지급 청구서(제7조제2항 관련)

시

년도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남 원 시 장 귀하

융자금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채 무 자		융 자 금		산출	내역	이 차 보 저 금	
주 소	성 명	일 자	금 액	원 금 잔 액	기간 이율(%)	이 차 보 전 금 및 청구액	
계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25 호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영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설치된 건축물, 야영시설(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퍼걸러, 야외무대, 놀이시설, 일반야영장, 데크야영장, 트레일러 야영장, 돔하우스 등) 및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 2. "관리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3. "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야영장

시설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入

제3조(위치) 야영장의 위치는 남원시 산곡동 산 13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야영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④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준수하여 운영 · 관리하여야 한다.
 - 1. 사용자의 편익도모 및 안전관리
 - 2. 환경오염방지 및 산지정화
 - 3. 산불예방 및 진화
 - 4. 사용자에 따른 야영장 시설물 등의 훼손방지
 - 5. 야영장 내 동식물 보호
 - 6. 시설물의 유지관리
 - 7. 그 밖에 야영장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 제5조(사용시간) ① 야영장은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
 - ②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사용시간은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제6조(관리인 등)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운영 여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 예약 및 납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현장 예약자는 예외로 한다.

户

- ② 사용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사용자는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일까지의 기한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일 현장 예약자는 사용료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 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시설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 2의 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 및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 ② 환불은 예약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 •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야영장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매점
 -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

- 제14조(시설의 사용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야영장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 4. 그 밖에 이용자가 시설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제한 기간과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 1. 산불위험기간
 - 2. 폭우 및 폭풍 등 재해위험 시
 - 3. 그 밖에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보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별표 1]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사용료 (제8조 관련)

시 설 별		규 격	1일 0		
		 (면적 / m²)	주 중	공휴일 전일, 주말	수 량
	야영사이트 (데크사이트)	4.5m*5.5m	30,000	30,000	12면
야영 시설	야영사이트 (파쇄석사이트)	5.5m*8.5m	30,000	30,000	14면
	야영사이트 (트레일러사이트)	7.5m*12.5m	30,000	33,000	3면
	돔 하우스	5.5m*5.5m	30,000	35,000	3면

※ 야영요금은 전기사용료,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사용 포함금액임.

〈비 고〉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전일의 구분

가.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다. 공휴일 전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

2.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3. 야영시설의 초과 사용료

가. 1시간까지: 5,000원

나.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다. 2시간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

라.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별표2]

제19호

시설사용권(제8조 관련)

NO ~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사용권(원부)

● 사 용 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인 원: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NO ~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 용 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인 원: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별표 3]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 관련)

이 곳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편안한 사용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입 장

▶ 야영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릅니다.

3 자 소

▶ 사용자께서는 지정된 야영장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 ▶ 자동차의 출입 시 23:00부터 07:00까지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야영장 내에서의 차량은 서행해 주시고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야영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시

5. 소 음

- ▶ 주변 사용자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심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 음수대는 식수용으로 공급되므로, 다른 용도의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놓으셔야 합니다.

7. 돗 물

▶ 시설 내에서는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 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 야영장 내 잔디와 주변 임아의 수목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이용하는 것을 급합니다.
- ▶ 음식의 조리 및 불 이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 야영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호 빈

- ▶ 야영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2. 전기시설

▶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1000w 이상) 이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26 호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하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계획과 추진방안
-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 남원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 2. 제19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변경

-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1. 당연직 위원
 - 가. 화학물질 업무 담당 국장
 - 나. 화학물질 업무 관련(환경, 안전, 보건) 부서의 장
 - 다. 남원경찰서 · 남원소방서 업무 관련 부서의 장
 - 2. 위촉직 위원
 - 가.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 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화학 · 환경 · 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마.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入

-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 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경우는 제외한다.
-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 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8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제19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

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入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 4. 화학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 5.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인력 · 장비 등의 동원방법
-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入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片

-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 제22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 2. 화학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27 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 시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 항에 따라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 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

- 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2.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구멍 뚫기)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

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시

-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入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 금지.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 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 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 금지.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 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축주는 간판표시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건축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간판표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 3. 광고물등의 유지 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1.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 디자인 관련 전문가
 - 3.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③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入

- ⑤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⑨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제26조제2항 각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 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
 -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
 -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

入

지사"라 한다)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

-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관리(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
-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음
-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지키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혜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 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 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入

- 2. 광고물등의 디자인
-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정할 수 있다.

户

-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 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⑧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 ⑨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 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의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入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광고물등의 표시 위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관계 법령 등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를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1. 사무실
-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시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발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9 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

시

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 2. 그 외 다른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위탁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지정서(별지 제1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⑦ 수탁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있다.
- ⑧ 수탁자는 현수막의 게시수수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매 분기별로 정 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수탁기관의 해제·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入

-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과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入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 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 2. 교육 대상자
 - 3. 교육 실시방법 절차 및 비용
 -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수 있다.
-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 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이수대 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 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

入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과오납한 경우
 -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 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수수료를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시

- 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 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9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2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m² 미만	
- 2m² 미만	20만원
- 2m² 이상 3m² 미만	30만원
- 3m² 이상 4m² 미만	40만원
- 4m² 이상 5m²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m² 이상 6m² 미만	55만원
- 6m² 이상 7m² 미만	65만원
- 7m² 이상 8m² 미만	75만원
- 8m² 이상 9m² 미만	85만원
- 9m² 이상 10m²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m² 이상 14m² 미만	130만원
- 14m² 이상 16m² 미만	145만원
- 16m² 이상 18m² 미만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m² 미만	
- 2m² 미만	20만원
- 2m² 이상 3m² 미만	30만원
- 3m² 이상 4m² 미만	40만원
- 4m² 이상 5m²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m² 이상 6m² 미만	55만원
- 6m² 이상 7m² 미만	65만원

- 7m² 이상 8m² 미만	75만원
- 8m² 이상 9m² 미만	85만원
- 9m² 이상 10m²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m² 이상 20m² 미만	
- 10m² 이상 12m² 미만	110만원
- 12m² 이상 14m² 미만	- 130만원
- 14m² 이상 16m² 미만	150만원
- 16m² 이상 18m² 미만	170만원
- 18m² 이상 20m²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m² 이상	200만원
- 2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m² 미만	
- 0.5㎡ 미만	30만원
- 0.5m² 이상 1m² 미만	35만원
- 1m² 이상 2m² 미만	40만원
- 2m² 이상 3m²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m² 이상 5m² 미만	
- 3m² 이상 3.5m² 미만	55만원
- 3.5m² 이상 4m² 미만	65만원
- 4m² 이상 4.5m² 미만	80만원
- 4.5m² 이상 5m²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m² 이상 10m² 미만	
- 5m² 이상 6m² 미만	110만원
- 6m² 이상 7m² 미만	130만원
- 7m² 이상 8m² 미만	150만원
- 8m² 이상 9m² 미만	170만원
- 9m² 이상 10m²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m² 이상	200만원
- 1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

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	
	1
1) 연면적 5m² 미만	
- 2m² 미만	30만원
- 2m² 이상 3m² 미만	35만원
- 3m² 이상 4m² 미만	40만원
- 4m² 이상 5m²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m² 이상 10m² 미만	
- 5m² 이상 6m² 미만	55만원
- 6m² 이상 7m² 미만	65만원
- 7m² 이상 8m² 미만	75만원
- 8m² 이상 9m² 미만	85만원
- 9m² 이상 10m²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m² 이상 12m² 미만	110만원
- 12m² 이상 14m² 미만	130만원
- 14m² 이상 16m² 미만	150만원
- 16m² 이상 18m² 미만	170만원
- 18m² 이상 20m²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m² 이상 25m² 미만	210만원
- 25m² 이상 30m² 미만	230만원
- 30m² 이상 35m² 미만	245만원
- 35m² 이상 40m² 미만	260만원
- 40m² 이상 45m² 미만	280만원
- 45m² 이상 50m²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m² 미만	30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연면적 10m² 이상 15m² 미만	60만원
- 연면적 15m² 이상 20m² 미만	70만원
- 연면적 20m² 이상	70만원
- 2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제19호

-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1)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예보탑
 - 연면적 5m² 미만
 - 연면적 5m² 이상 10m² 미만
 - 연면적 10m² 이상 15m² 미만
 - 연면적 15m² 이상 20m² 미만
 - 연면적 20m² 이상
 - 2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 2) 교통안내소
- 3)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 광안내도
-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1) 비행선
 - 연면적 10m² 미만
 - 연면적 10m² 이상
 - 1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 2) 그 밖의 교통수단
- 가) 연면적 3m² 미만
- 1 m² 미만
- 1m² 이상 2m² 미만

30만원

片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 2m² 이상 3m²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m² 이상 4m² 미만	35만원
- 4m² 이상 5m²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m² 이상	50만원
- 5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 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 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 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시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고
신규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가. 교육대상	
교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사하려는 자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받은 자(종업원을 포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나. 교육방법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	- 집합교육	
		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가. 교육대상	법·령·조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제·개정 시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받은 자(안전점검 종	
		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사자를 포함한다)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자가 아닌 자도 가능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나. 교육방법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행정처분	3시간	가. 관계법규	가. 교육대상	
대상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 법 14조 규정에 따라	
교육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광고사업자	
		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나. 교육방법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	
			우에는 보수교육 등	
			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정함	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시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m² 이하	3,000원
- 면적 5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m² 이하	30,000원
- 면적 5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m² 이하	15,000원
- 연면적 5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8,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27,000,43
- 연면적 10m²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m²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m² 이하	3,000원
- 연면적 1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	3,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m² 이하 - 10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m² 이하 - 10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하. 벽보(1건)	3,000원
거. 전단(500매마다)	3,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 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 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하다.
-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시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제19호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5m² 이하 - 연면적 5m² 초과 20m² 이하 - 연면적 20m² 초과시 1m²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m² 이하 - 연면적 50m² 초과 70m² 이하 - 연면적 70m² 초과시 1m²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바. 공연간판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시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 하여 산정한다.
- 라.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 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사.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차.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 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 배를 적용한다.
- 카. 제2호가목1)라) · 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 타.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1) 입간판 가) 면적 1m² 이하 나) 면적 1m² 초과 2m² 이하 다) 면적 2m² 초과 3m² 이하 라) 면적 3m² 초과하는 면적 0.5m²당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m² 이하 나) 면적 3m² 초과 5m² 이하 다) 면적 5m² 초과 10m² 이하 라) 면적 1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3) 벽보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보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	법 제20조		'				
입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1만원에 1일째부터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		10만원에 31일째부터					
일 이하인 경우		계산하여 1	일마다 1만원을	·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70 ¹	만원에 91일째투	브터			
경우		계산하여 1	일마다 2만원을	·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	법 제20조						
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	법 제20조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법 제20조	29만원	49만원	99만원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제3조제1항 관련)

1)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18	19		
번	② 성	③ 생	④ 업	⑤ 전	⑥ 주	① 오디	8 중	9 ^	10) 17	①1) 丑	(12) H	⑬ 광	①4 준	①5 성	①6 주	① 전	변	H
		년	소	화		아 저 파이그				시	시	고	공			화	경	
		월		번		정쁘Ю				위	기	내	일			번	사	
호	명	일	명	호	소	독 번 호	류	량	격	치	간	용	자	명	소	호	항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제19호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제3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시기간 . . 까지 남원시장

보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전단신고필(제3조제1항 관련)

제19호

_______ 전단 신고필

보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00

. . 까지 00장 배포

남 원 시 장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남원시에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별지 제4호서식]

	i	간판표시	계획시	(제7조	제2항	관련)			
신청인	성 명								
(건축주)	주 소								
(包括于)	생년월일			전화번호	-				
	건축위치								
건축물	지하 층	건축물	2	용 도 별		시설:	m²,	시설:	m²
	지상 층	연면적	m²	바닥면적		시설:	m²,	시설:	m²
시기기	정			사무소명 (전화번호	I	()	
설계자	사무소								
	주 소								
	종류	수팅	냥			규격(m)		
	가로형-1 (입체형)			가로 :	세로 :	두께 :			
	가로형-2 (판류형)			가로 :	세로 :	두께 :			
	가로형-3 (건물명)			가로 :	세로 :	두께 :			
	세로형-4 (건물명)			가로 :	세로 :	두께 :			
	돌출간판			가로 :	세로 :	두께 :			
옥외광고물	지주간판			가로 :	세로 :	높이 :			
표시	옥상간판			가로 :	세로 :	높이 :			
				가로 :	세로 :	두께 :			
				가로 :	세로 :	두께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주 재료								
	전기시설 사용여부	여 , 부		종류	네온, LE	ED, 형광등	,백열등 기	 기타	
	색채								
기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 수수료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	물 등 심의	리신청서	(제14	조제3형	항 관련)	
	성 명			생 년	월 일			
광 고 주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광 고 물 설치장소						()
광 고 물 심 의	광고물 종류 (사용조명)	()	수량		신 청 구 분	신규, 변경	!
신청내역	광 고 물 규 격(m)			구 3 총 높				
	광고내용							
	성 명			업 소	느 명			
시공업소 (광고업자)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건 축 주			준 공	년 도			
건 축 물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신 국 골 현 황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건 물 규 모	대지면적(건물층수(지하	m²), 층, 지상		건축면적(건물높이(m²) m²)	
주변상황								
「남원시 옥	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전	진흥에 관한 조	트례」제143	조제3항에	따라 위오	ት 같이 옥외광 <u>:</u>	고

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6호서식]

제19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제16조제1항 관련)

※[]에는 해당되	는 곳에 ✓표를 합니다.	(9	앞 쪽 <u>)</u>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연장[]변경	
광고물등의 혀	러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등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뒤 쪽)

검시	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분	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	용자재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기 <u>조</u> 구군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T.9.VIVII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	' 설비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u>.</u>	를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7	2.00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인위적 상황 기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9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제16조제1항 관련)

1)	2		신청자		6	7)	8	9	10	(1)	(12)		검사자		16
신	신	3)	4)	(5)	광고	광고물등	표시	광고물등	검	검	검	(13)	(14)	(15)	비
청	청	성	업	주	물등 허가	의	위치	의	사	사	사	소	직	성	
번	일		소		일자 (허가	종류	또는	규격	일	구	결				
호	자	명	명	소	번호)		장소		자	분	과	속	명	명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제18조제3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선청자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당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시행령」 제38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년 월 일					
	신청인						
	남 원 시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					
구비서류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5						

[별지 제9호서식]

제19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보

(제18조제4항 관련)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11 17 12	20 .	~ 20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제18조제6항 관련)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남 원 시

< 뒤 쪽 >

소 속:

직 위: 성명:

생년월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례」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 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신청서

(제19조제4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신청자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_] 전호	
LI FOLTI OUL	나그므 드이 괴기이 오이라그시어 지층에 괴쉬 :	포게 제40포제4형에 떠지 이어 7년이 자구시설모
	3고눌 등의 관리와 속외용고산업 신응에 관안 : 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시설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경	당 귀하
		수수료
7	1. 신청자(기관단체) 자기소개서 1부.	11#
구비서류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지정서

(제19조제5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대표자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변	년호
위탁기간		
「남원시 옥외광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려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9호	시	보	2024. 4. 2(화)

[별지 제13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보관 관리대장

(제21조제3항 관련)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①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반환청구서

(제21조제4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성명
 생년월일

 인수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제19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보

(제21조제5항 관련)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성명
수강자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시

(제21조제5항 관련)

	2	3	4)			
①번호	교 육	교 육	소 속	⑤성 명	⑥생년월일	비고
	과정명	수료일자	업소명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제19호

2024. 4. 2(화)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24조제1항 관련)

제 호	茨	네리기간 30일		
	성명 생년	년월일 -		
신청자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	ग हो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재활용품)]		

제19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보

(제24조제2항 관련)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片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28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점심시간(11:30~13:30) 주차시: 면제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 수조례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각각 "광한루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 "를 "광한루원, 남원항공우 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 허브밸리 "로 한다.

시

- ②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각각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지리산 허브밸리"를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 학체험관, 지리산허브밸리 "로 한다.
- ③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별표 1 중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을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이린이과학체험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로 한다.
- ④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중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으로 한다.
- ⑤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중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시

혅 했 개 정 안 제12조(주차료) ① ~ ③ (생 략) 제12조(주차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남원시 주차장 조 ④ -----례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 우에는 높은 할인 요율을 적용 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 3. 점심시간(11:30~13:30) 주차 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1시간 시: 면제 이내 면제(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⑤ 시장은 주소지가 시로 되어 | <삭 제>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시간 이내 주차시 주차 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야 한다.

[별표 1] <개정 1995.3.23, 2000.4.1, 2004.6.5, 2007.7.10., 2011.10.14.,2015.8.7. 2017.10.13., 2018. 5. 4, 2023.4.7.>

광한루원 입장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개 인	4,000	2,000	1,500
단 체	2,500	1,500	1,000
할인(연계)	1,800	1,000	700

※ 연계 할인권은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1995.3.23, 2000.12.30, 2007.7.10, 2008.12.30., 2013.2.1.,2016.9.23>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 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000원	30,000원	
2. 승 합 차			월 주차료는
·소형버스(15인승 이하)	2,000원	30,000원	매월 1일에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4,000원	60,000원	납부하여야
3. 화 물 차			한다.
·1톤 이하	2,000원	30,000원	
·1톤 초과	3,000원	45,000원	
			1

- ※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 가) 4월 ~ 10월 08:00 ~ 18:30
 - 나) 11월 ~ 3월 08:00 ~ 17:30
 - 다) 점심시간(11:30~13:30) 주차료 면제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98.11.9, 2002.10.2, 2004.6.5, 2006.12.28, 2007.7.10, 2009.1.30., 2011.10.14.,2015.8.7.,2018.5.4., 2023.4.7..>

(앞 면)

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영수증)

『광한루원 사진』

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수 丑)

광 한 루 원

www.namwon.go.kr

남원시장

(직인)

(뒷 면)

『광한루원 안내도』

※ 본 입장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 한정하여 입장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 허브밸리, 남원시 어

린이과학체험관 입장 요금을 할 인 받을 수 있습니다.

광한루원

www.namwon.go.kr

남 원 광 한 루(보물)

∘1419년(세종원년) : 황희정승이 광통루 건립 ∘1444년(세종26년)

: 정인지가 광한루 개칭 •1597년(선조30년)

: 정유재란으로 전소 •1626년(인조4년)

: 남원부사 신감이 재건 •1963년 1월 21일

: 보물 제281호로 지정

•2008년 1월 8일 : 명승제33호(광한루원)지정

관람시간 하절기(4월~10월) 08:00~21:00 동절기(11월~3월) 08:00~20:00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55776)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www.namwon.go.kr Tel 063-625-4861 fax 063-620-6834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보

남 원 시 장

시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29 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한한다"를 "사람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	제3조(지원대상)
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남	
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자에 한한다</u> .	<u>사람에 한정한다</u>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u>는 사람</u>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片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워시 조례 제 2030 호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 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 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 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入

- 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 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제1형 당 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 2.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 3. 그 밖의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일 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남원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인슐린 자동주입

기 구입 또는 장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중복지원 제외)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에 따른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7조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 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1형 당뇨병 관리기 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11조(통계관리)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개 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안에서 수집 · 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보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 2031 호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남원시"를 "남원시의회"로 한다.

제5조 중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 규정을"을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월, 원)

구 분	日	의정활동비 지급 내역		น) –า
	亡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의	원	1,200,000	300,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혅

시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 당은 매월 남원시 공무원의 보 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생 략)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제5조(준용)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월, 원)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 내역		קן ד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의원	900,000	200,000	·

개 정 안

지급) ① -----

----- 남원시의회 -----

② (현행과 같음)

-----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

<u>비 조례를</u> -----.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월, 원)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 내역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0	1원	1,200,000	300,000	